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145
----------	--------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구 거리가게 운영자 중에서 생계형 운영자에게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
하고, 관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 마련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목적 및 존속기한(안 제1조~제2조)
-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대상(안 제5조)
- 라.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안 제6조~제7조)
- 마.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안 제8조~제12조)
- 바. 기금운용계획, 결산 및 성과분석(안 제13조~제14조)
- 사. 회의록(안 제15조)
- 아. 시행규칙(안 제16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3)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제117조(과태료)
- 4)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9. 26. ~ 10. 16.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 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의 환경 개선, 운영의 자립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에 따른 일시 점용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부과하는 점용료
2.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점용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는 변상금
3.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도로상에 소규모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거리가게”

라 한다) 운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거리가게가 철거 및 정비된 경우

나. 영업의 어려움으로 자진정비하여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필요한 소양 교육 및 전업을 위한 교육 지원비

3.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가게 시설 개보수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영업 중인 거리가게의 운영자 중 “생계형 거리가게”(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영세한 사업형태로 운영 중인 사실이 인정된 거리가게를 말한다)로 인정된 운영자에 한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사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가로정비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기획예산과장, 생활보장과장
3.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로정비팀장이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위·성명
3. 심의안건 및 심의사항 등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
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2)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
한 조례 제12조(수당)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에 따른 연도
별 소요예산 및 내역

나. 비용추계기간 : 2020. 1. ~ 2024. 12. (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구분	생활안정자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교육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시설개보수비	62,500	62,500	62,500	62,500	62,500	312,50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680	1,680	1,680	1,680	1,680	8,400
	합 계	199,180	199,180	199,180	199,180	199,180	995,9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구분							
자체수입	지방세수입등	199,180	199,180	199,180	199,180	199,180	995,900
합 계		199,180	199,180	199,180	199,180	199,180	995,900

5. 덧붙이는 의견

구체적인 재원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교통건설국 건설관리과 김은화 (☎ 3153-9723)